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2. 선박교통관제관서(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작업·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에 한함)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 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 구역에서 선박이 접안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 구역에서의 법 제11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의 고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지형·조류, 해상기상 등 그 밖에 자연적 조건

2. 해상교통량

3. 선박운항통제의 필요성

4.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입항 예정 시간, 입항 시간 및 입항 장소(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에 한함)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

가. 선명, 통과위치

나. 출항 예정 시간, 출항 시간 및 출항 장소(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선박교통관제구역별 선박의 신고 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선박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 ①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동보고: 정박지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항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繫留施設)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단,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이동 예정 장소, 이동 예정 시간, 이동시간 및 목적지

나. 이동 완료 시간 및 이동 완료 장소

2.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가 승선

• 하선하는 경우

가. 도선구간의 승선·하선 시간

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 시간

② 선박교통관제구역별 선박의 보고 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관제통신의 제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의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비상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

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관제통신을 한 날짜와 시간도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1.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관제통신
2. 선교(船橋)에서 발생하는 관제통신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기(手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초단파 무선전화의 통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통화량 급증 등으로 인하여 초단파무선전화로 통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제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평가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및 평가의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기술개발의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게 위탁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을 이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의 2. 개별기준 표의 너목, 더목, 러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을 삭제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2. 개별 기준 표의 거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를 삭제한다.

운항자 교육·훈련의 내용 (제2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	주요 내용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교통관제의 목적·용어의 정의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국제항로표지협회 선박교통관제 매뉴얼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1)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방법 2) 일반통신 3) 긴급통신 4) 조난통신 5) 비상통신망의 사용 6)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3.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2) 관제대상선박의 범위 3)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 4) 관제통신의 녹음 5) 관제업무 절차 6)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4.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1)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구역 2) 선박교통관제관서별 통신 주파수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 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90	150	300

나.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00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90	150	300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60	100	200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90	150	300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90	150	300